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1. 11 선고 2017가합549969 판결 [구상금 등 청구]

전 문

원고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형민, 강대희

피고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엘 담당변호사 김용재

변론 종결 2020. 10. 28.

판결 선고 2020. 11. 11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648,315,010원 및 위 돈 중 646,330,250원에 대하여 2017. 5. 3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0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주식회사 B(이하 'B'라 한다)와 사이에, B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① 2011. 4. 8. 보증기간은 2011. 4. 8.부터 2017. 3. 31.까지, 보증금액은 300,000,000원으로 한(최종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), ② 2013. 5. 15. 보증기간은 2013. 5. 15.부터 2018. 5. 14.까지, 보증금액은 195,500,000원으로 한, ③ 2016. 3. 31. 보증기간은 2016. 3. 31.부터 2017. 3. 30.까지, 보증금액은 144,000,000원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고,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.

나. 피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B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.

다. 그런데 B가 2017. 3. 31. 위 각 대출금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, 이에 따라 원고가 위 각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)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

피고는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피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(서울회생법원 2017하단100890호, 2017하면100890호)을 하였고, 2020. 4. 17.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20. 5. 2. 확정된 사실,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에 관한 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.

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에 관한 채권은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으로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을 상실하였으므로,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이성호

판사배온실

판사신예슬

1) 원고는 소 제기 당시 C을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도 함께 구하였으나, 피고가 2017. 10. 16.

서울회생법원 2017하단100890호 파산사건에서 파산선고결정을 받음에 따라 피고의 파산관재인이 위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수계신청 및 이송신청을 하였고,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D과 C 사이의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변론이 분리되어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되었다.